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90 호     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10년 12월 일<br>(제296회) |

**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 
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|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김봉희 의원 외 6명   |
| 발의연월일 | 2010년 11월 30일 |

##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봉희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|
| 의안<br>번호 | 90 |
|----------|----|

발의연월일 : 2010년 11월 30일  
발 의 자 : 김봉희·윤성옥·황규철·박문희·  
김종필·정현·김희수 의원 (7명)

### 1. 제안 이유

- 충북도의 전략산업을 육성·지원하고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내용

- 가.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수정(안 제1조, 안 제2조 등)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# 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### 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와 협의

### 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22 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,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수립·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”를 “뜻은 다음과 같다.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지역”을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전략산업을 집중육성 지원하고,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지역전략산업”이라 함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 내 고부 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 1조제 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,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-----이란 -----<br/>-----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
|  |   |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2. “지역연구개발사업”이라 함은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 | 2. -----이란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<br>-----. |
| 3. “첨단기술 및 첨단제품”이라 함은 「산업발전법」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.              | 3. -----이란-----<br>-----<br>-----따라-----<br>-----.    |
| 4. “과학관”이라 함은 「과학관 육성법」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-----이란-----<br>-----<br>-----따라-----.             |
| 5. “연구개발과제”라 함은 지역연구개발사업(이하 ‘연구개발사업’이라 한다)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.       | 5. -----란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<br>-----.  |



## 관 계 법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

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① 시·도지사와 광역 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·도의 지역전략 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
2.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